

의안번호	2115383
의 퇴 인	배준영 의원
회 답 일	2022. 11. 4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2115383)

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□ 적용기한: (현행) 2022.12.31.까지 → (개정안) 2025.12.31.까지

재정수반요인	추계여부	비고
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72조)	○	
조합 등 출자금·예탁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)	○	
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)	○	

II. 비용추계 결과

□ 세수효과: 향후 4년간 총 8조 2,217억원, 연평균 2조 554억원 감소

[표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3~2026년,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누적	연평균
합 계	-20,654	-27,204	-27,797	-6,563	-82,217	-20,554
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72조)	-	-4,746	-4,942	-5,147	-14,835	-4,945
조합 등 예탁금·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8조의5, 89조의3)	-1,770	-3,185	-3,185	-1,416	-9,555	-2,389
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)	-18,884	-19,273	-19,670	-	-57,827	-19,276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2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3
1.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72조)	3
2. 조합 등 예탁금·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88조의5 등)	5
3.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) ...	7
4. 비용추계 결과	9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농림어업 분야 지원 목적의 조세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는 2023년 2조 654억원, 2026년 6,563억원 등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년간 총 8조 2,217억원(연평균 2조 55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3~2026년,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누적	연평균
합 계	-20,654	-27,204	-27,797	-6,563	-82,217	-20,554
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72조)	-	-4,746	-4,942	-5,147	-14,835	-4,945
조합 등 예탁금·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8조의5, 제89조의3)	-1,770	-3,185	-3,185	-1,416	-9,555	-2,389
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)	-18,884	-19,273	-19,670	-	-57,827	-19,276

주: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한 연도만 반영하여 계산

II. 재정수반요인

-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2년말에서 2025년말로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72조)
 - 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
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2년말에서 2025년말로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88조의5, 제89조의3)

- 농협, 신협,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(1천만원 이하)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(3천만원 이하)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
 - 적용기한: (비과세) 2022.12.31.까지 → 2025.12.31.까지
 - (저율과세) 2023.1.1.~2023.12.31. → 2026.1.1.~2026.12.31.
-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2년말에서 2025년말로 연장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5조 제1항)
 -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

Ⅲ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개정안은 2022년 중 통과되어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는 조합법인의 2021년 법인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세수효과에 최근 감면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단, 세수효과는 현행 및 개정안의 총부담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과표구간별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중은 2021년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- 조합 등 출자금·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대한 세수효과는 최근 3년의 평균 실적치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개정안에 따르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혜택으로 2026년까지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-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감면실적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72조)

-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3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연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10%	9%
	2~20억원	20%	
	20~200억원		12%
	200~3,000억원	22%	
	3,000억원 초과	25%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
- (감면실적) 2022년 조합법인 과세특례로 인한 감면실적(잠정치)은 산출세액 기준 4,377억원
- 동 조항에 따른 조세감면의 연평균 증가율은 특이치(연간 상승률 30% 이상)를 제외하면 4.1% 수준

- 단,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은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된 값으로, 총부담세액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

[표 4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법인세 감면실적: 산출세액 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‘18~’22년)
감면실적	2,451	3,636 (22.7) ¹⁾	3,271 (-10.0)	3,347 (2.3)	4,377 (30.8)	4.1 ²⁾

주: 1) ()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2) 연평균 증가율은 특이치인 2022년을 제외하고 계산한 값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□ (추계방법)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조합법인의 2021년 기준 과표구간별 1법인당 세수효과와 법인 수를 곱하여 전체 세수효과를 추정한 후, 최근 감면실적의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정

- 2021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1인당 과세표준 및 총부담세액(추정치)은 다음과 같음

- 총부담세액은 과표구간별 산출세액 실적에서 비영리조합 법인세 신고내역의 과표구간별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을 곱하여 추정

※ 비영리조합 법인세 신고내역은 과세특례 대상 조합법인 중 조합유형이 식별되는 2,495개의 조합법인의 법인세 신고 자료를 의미

[표 5]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과세표준, 산출세액 및 총부담세액: 2021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세율 (C%)	산출세액 (D=B×C , 억원)	총부담세액 산출세액 (E,%)	총부담세액 (F=D×E , 억원)	1인당	
							과세표준 (B/A 억원)	총부담세액 (F/A 억원)
합 계	3,796	39,375	-	3,913	-	3,844	10.4	1.0
2억원 이하	1,136	838	9	76	97.1	74	0.7	0.1
2~20억원	2,174	16,758		1,510	97.1	1,467	7.7	0.7
20~200억원	484	21,359	12	2,277	99.0	2,254	44.1	4.7
200~3,000억원	2	4,204		49	99.9	49	210.2	24.6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1년 조합법인 과세특례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는 총부담세액 기준 3,398억원으로 추정
- 세수효과는 2021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현행 및 개정안의 1인당 총부담세액의 차이와 법인 수를 반영하여 계산

[표 6] 과표구간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세수효과: 2021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1인당						전체 세수효과 (A×E, 억원)
		과세표준 (B,억원)	과세특례 미적용		과세특례 적용		세수효과 (E=D-C, 억원)	
			세율	총부담 세액 (C,억원)	세율	총부담 세액 (D,억원)		
합 계	3,796	10.4	—	1.9	—	1.0	−0.9	−3,398
2억원 이하	1,136	0.7	10	0.1	9	0.1	−0.01	−5
2~20억원	2,174	7.7	20	1.5		0.7	−0.8	−1,407
20~200억원	484	44.1		7.8	12	4.7	−3.1	−1,943
200~3,000억원	2	210.2	22	45.1		24.6	−20.5	−43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2년 잠정실적의 증가율과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4.1%)을 반영하여 추계
 - 2022년은 감면실적(잠정치)의 증가율(30.7%), 2023년 이후는 최근 5년 연평균 감면 실적 증가율(4.1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7] 조합법인 과세특례 감면액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
감면액	4,377	4,558	4,746	4,942	5,147

- (추계결과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4년 4,746억원, 2026년 5,147억원 등 2024년에서 2026년까지 3년간 총 1조 4,835억원 (연평균 4,945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8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: 2024~2026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22조)	-4,746	-4,942	-5,147	-14,835	-4,945

2. 조합 등 예탁금·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)

-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신용협동조합·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

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소득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
- 조합 등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 소득과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
 - 적용기한: (비과세) 2022.12.31.까지 → 2025.12.31.까지
(저율과세) 2023.1.1.~2023.12.31. → 2026.1.1.~2026.12.31.

[표 9]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과세 특례

	현행	개정안
비과세	· 2022.12.31.까지	· 2025.12.31.까지
저율과세	· 2023년: 5% · 2024년 이후: 9%	· 2026년: 5% · 2027년 이후: 9%

□ (감면실적) 2019~2021년 평균 조세지출액은 4,955억원 수준

- 동 조항의 2017년 이후 감면실적은 뚜렷한 증감추이를 보이지 않음

[표 10] 조합 등 출자금·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세지출 실적

(단위: 억원, %)

	2017	2018	2019	2020	2021(잠정)	'19~'21 평균
감면실적	5,521 (-2.7)	5,926 (7.3)	5,859 (-1.1)	4,863 (-17.0)	4,142 (-14.8)	4,955

주: ()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□ (추계방법) 현재 조세지출액은 이자·배당소득세율이 14%일 때 기준이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율 차이는 2023년 5%p, 2022년 9%p, 2026년 4%p로 세율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3~2025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26년은 5%, 2027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11] 조합 등 예탁금·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이자/배당 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3	2024	2025	2026	2027년 이후
현행(A)	5	9	9	9	9
개정안(B)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-5	-9	-9	-4	0

- 이자·배당소득세율이 14%일때 평균(2019년~2021년) 조세지출액이 4,955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354억원 (4,955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서 14% 적용
 - 연도별 세율 차이에 1%당 조세지출액을 곱하여 연도별 세수효과 추정
- (추계결과) 조합 등 출자금·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는 2023년 1,770억원, 2026년 1,416억원 등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년간 총 9,555억원(연평균 2,38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: 2023~2026년,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합계	연평균
조합 등 예탁금·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8조의5, 89조의3)	-1,770	-3,185	-3,185	-1,416	-9,555	-2,389

3.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 연장 (안 제105조제1항)

- (제도개요)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림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
- 「비료관리법」, 「농약관리법」 등의 비료 및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적용
 - 농업용 기자재 41종(농약·트랙터·콤바인 등), 축산업용 기자재 39종(양돈케이지·사료저장탱크 등), 임업용 기자재 15종(약제주입기 등), 어업용 기자재 41종(어망 등),

기타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 50종(목초액 등)

□ (감면실적)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따른 감면액은 2014~2020년간 연평균 2.1% 증가

- 동 조항의 감면실적은 2014년 1조 5,717억원에서 2020년 1조 7,763억원으로 증가(연평균 증가율 2.1%)하는 추세

[표 13]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 실적: 2014~2020년
(단위: 억원, %)

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연평균 증가율 (‘14~’20년)
감면액	15,717	14,514 (-7.7)	14,897 (2.6)	16,090 (8.0)	17,475 (8.6)	18,770 (7.4)	17,763 (-5.4)	2.1

주: ()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□ (추계방법)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7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(2.1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14]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의 감면액 추정치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
감면액	17,763	18,129	18,503	18,884	19,273	19,670

□ (추계결과) 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부가가치세는 2023년 1조 8,884억원, 2025년 1조 9,276억원 등 2023년에서 2025년까지 3년간 총 5조 7,827억원 (연평균 1조 9,276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: 2023~2025년,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누적	연평균
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)	-18,884	-19,273	-19,670	-57,827	-19,276

4. 비용추계 결과

-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농림어업 분야 지원 목적의 조세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는 2023년 2조 654억원, 2026년 6,563억원 등 2023년에서 2026년까지 4년간 총 8조 2,217억원(연평균 2조 55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6]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: 2023~2026년, 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3	2024	2025	2026	누적	연평균
합 계	-20,654	-27,204	-27,797	-6,563	-82,217	-20,554
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(안 제72조)	-	-4,746	-4,942	-5,147	-14,835	-4,945
조합 등 예탁금·출자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(안 제88조의5, 89조의3)	-1,770	-3,185	-3,185	-1,416	-9,555	-2,389
농림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)	-18,884	-19,273	-19,670	-	-57,827	-19,276

주: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한 연도만 반영하여 계산

국회예산정책처	세제분석2과, 세제분석1과
과장	백경엽, 박연서
추계세제분석관	박정환, 박지원. 김효경
연락처	02-6788-4835
	jhpark83@assembly.go.kr
